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1.5.1., 학교법인 동은학원 법인행정팀-80(2021.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7장(학위논문)에 규정한 학위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

① 석사학위과정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9.9.1.>
2.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학칙 제14조에서 정한 정규등록을 필한 자 <개정 2006.9.1., 2013.12.1., 2015.3.1.>
5. <삭제 2012.9.1.>
6.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단,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1.>
7. 학위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및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3.1.>

② 박사학위과정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6.9.1., 2009.9.1.>
2.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정규등록 5학기를 필한 자
5. 재학기간 및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 내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로,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INDEX MEDICUS 등 1곳 이상에 논문을 게재한 자. 단,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과학과, 의생명과학과에 한함(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개정 2009.9.1., 2012.9.1., 2016.9.1., 2017.6.1., 2017.12.1., 2021.5.1.>
6.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단,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1.>
7. 학위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및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3.1.>

③ 석·박사 통합과정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6.9.1., 2009.9.1.>
2. 석·박사 통합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정규등록 9학기를 필한 자. <개정 2014.9.1., 2014.12.1.>

## 8-1-1-2 대학원행정

5. 재학기간 및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 내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로,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INDEX MEDICUS 등 1곳 이상에 논문을 게재한 자. 단,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과학과, 의생명과학과에 한함.(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개정 2009.9.1., 2012.9.1., 2016.9.1., 2017.12.1., 2021.5.1.>
6. 석·박사통합과정 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단,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1.>
7. 학위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및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3.1.>

**제3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1.>

- ①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 ② 박사학위논문 : 취급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 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 ③ 논문은 국문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7.6.1.>

**제4조(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지도교수는 전공 분야와 동일 계통의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은 학과(전공) 특성상 박사학위가 없는 전임교원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09.9.1., 2013.12.1., 2016.3.1.>

- ② 각 학과 계열의 경우 지도교수의 학생수는 제한될 두지 않는다. 단, 의학계열은 지도교수 1인이 1년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석사 2명, 박사 1명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5.3.1., 2009.9.1.>
- ③ 논문지도 교수는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학기 이상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9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6.3.1.>
- ④ 학.연.산 협동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는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6.12.1.>
- ⑤ 지도교수가 연구년으로 국내/외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학문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9.1.>

**제5조(학위논문 원고 제출)** 학위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준수 확인서'에 서약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작성하여 소정기일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2010.9.1., 2013.12.1., 2014.9.1., 2014.12.1.>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 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 ②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위원을 확정하고 심사토록 위촉한다. <개정 2017.6.1.>
- 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

사학위 및 석·박사통합학위 심사위원 중 3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전공분야와 동일계통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석사 과정은 학과(전공)의 특성상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전임교원도 할 수 있다. <신설 2006.9.1., 2009.9.1., 2014.9.1., 2014.12.1.>
- ⑤ 지도교수가 장기간 부재 등으로 논문심사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지명하는 동일 전공분야 교수 또는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지도교수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논문에는 원래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17.6.1.>
- ⑥ 외부인사라 함은 다른 학과 또는 교외에서 해당 전공 분야의 동등한 학위를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신설 2018.9.1.>

**제7조(심사위원장)** ① 논문지도교수는 해당논문심사의 심사위원이 되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3.1., 2017.6.1.>

-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3.1.>

**제8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논문심사), 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행한다.

-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예비심사 1회, 본심사 그리고 최종 구술시험으로 행한다.
-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예비심사 3회 본심사 그리고 최종 구술시험으로 행한다.

**제9조(논문 예비심사의 방법)** ① 석사학위 논문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학과별 또는 학회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학과별 또는 학회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4. 논문제출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1회의 공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식 예비심사의 심사요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예비심사 판정)**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제11조(학위논문의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 ②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에게 부분, 역본, 또는 모형,

#### 8-1-1-4 대학원행정

기타 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

- ③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 ④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2조(논문평가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하며,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13조(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

- 제14조(최종 구술시험)**
- ①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 ② 구술시험의 평가방법은 논문 본심사의 평가 방법을 따른다.
  - ③ 학위논문 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에 다시 불합격될 경우 학위논문의 합격 판정은 취소된다.

**제15조(학위논문의 최종 작성)** 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예비심사에서의 수정·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9.1.>

- ① 판종 : 4·6배판(19cmX26cm)
- ② 지질 : 80파운드 이상 모조지
- ③ 인쇄방식 : 단면 인쇄 또는 양면 인쇄한다.
- ④ 제본식 : 클로스양장제본(하드카바)으로 한다. <개정 2015.11.1., 2018.9.1.>
- ⑤ 표지색깔 : 논문의 표지는 흑색(검정색) 하드카바로 하며 클로스 양장제본으로 제목 등의 글씨는 석사학위 논문은 은박인쇄, 박사학위 논문은 금박인쇄로 한다. <개정 2015.3.1.>

\* 흑(黑)색 : 검은색

- ⑥ 표지인쇄 방식 :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3.1.>
- ⑦ 속표지의 양식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
- ⑧ 인준서 양식 :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3.1.>
- ⑨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1. 겉표지
2. 속지
3. 속표지
4. 인준서
5. 목차
6. 국문요약
7. 본문
8. 참고문헌
9.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10. 영문요약
11. 감사의 글 : 논문제출자가 개인 또는 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할때.

**제17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석사3부[은박인쇄(하드커버)], 박사3부[금박인쇄(하드커버)]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2009.9.1., 2014.12.1., 2015.11.1., 2016.12.1., 2018.9.1., 2019.3.1.>

**제18조(논문 심사료)** 논문제출자는 예비심사 전에 소정의 심사료를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 논문은 별도 지정한 날까지 DB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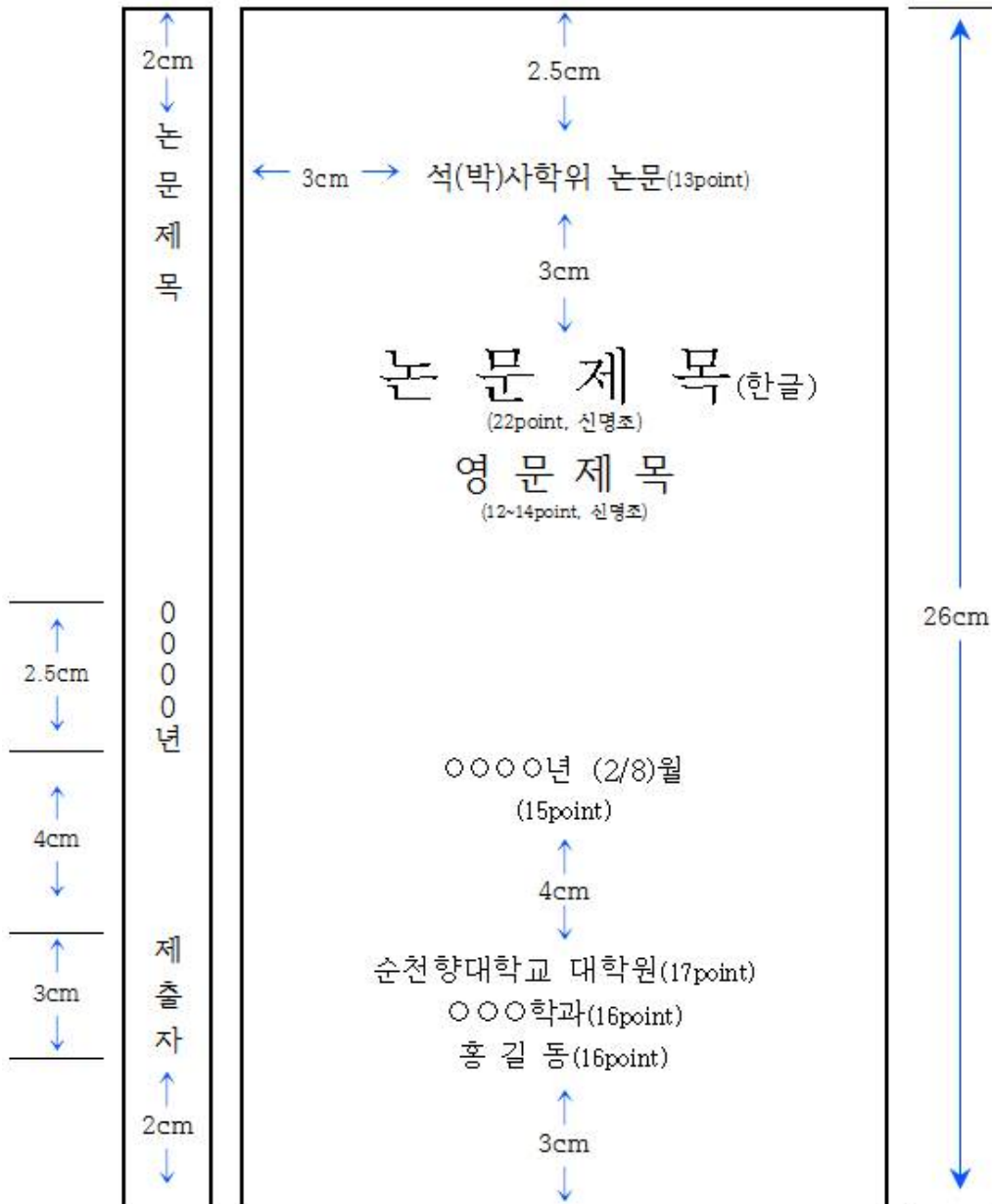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1-1-8 대학원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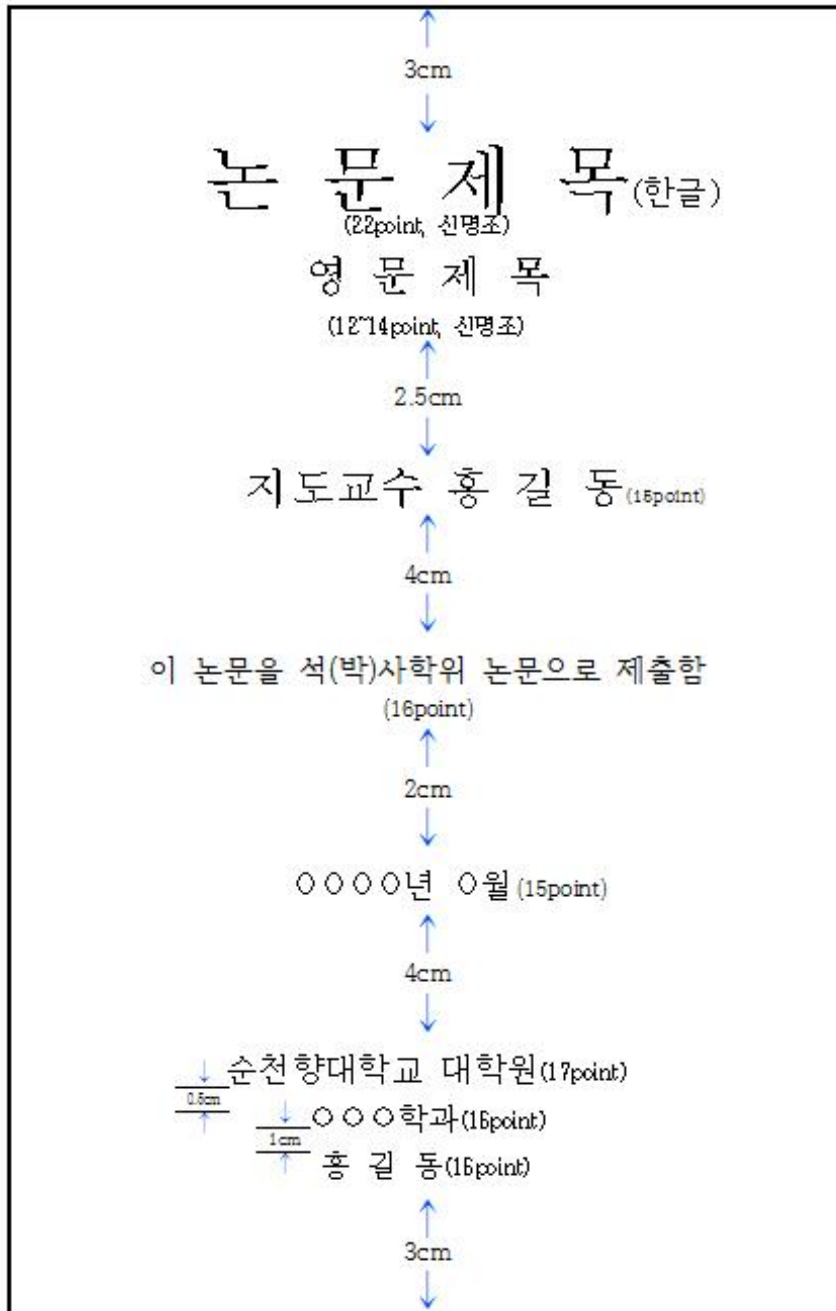
[별표1] 표지인쇄방식 <개정 2015.3.1.>



- \* 책등(측면)에 논문 제목을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 상단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눕혀서 표기함
- \* 책등(측면)의 연도는 학위수여일이 속한 년도를 표시함
- \* 겉표지의 발간년도는 학위수여일이 속한 년도와 월까지 표시함(0000년 2월 또는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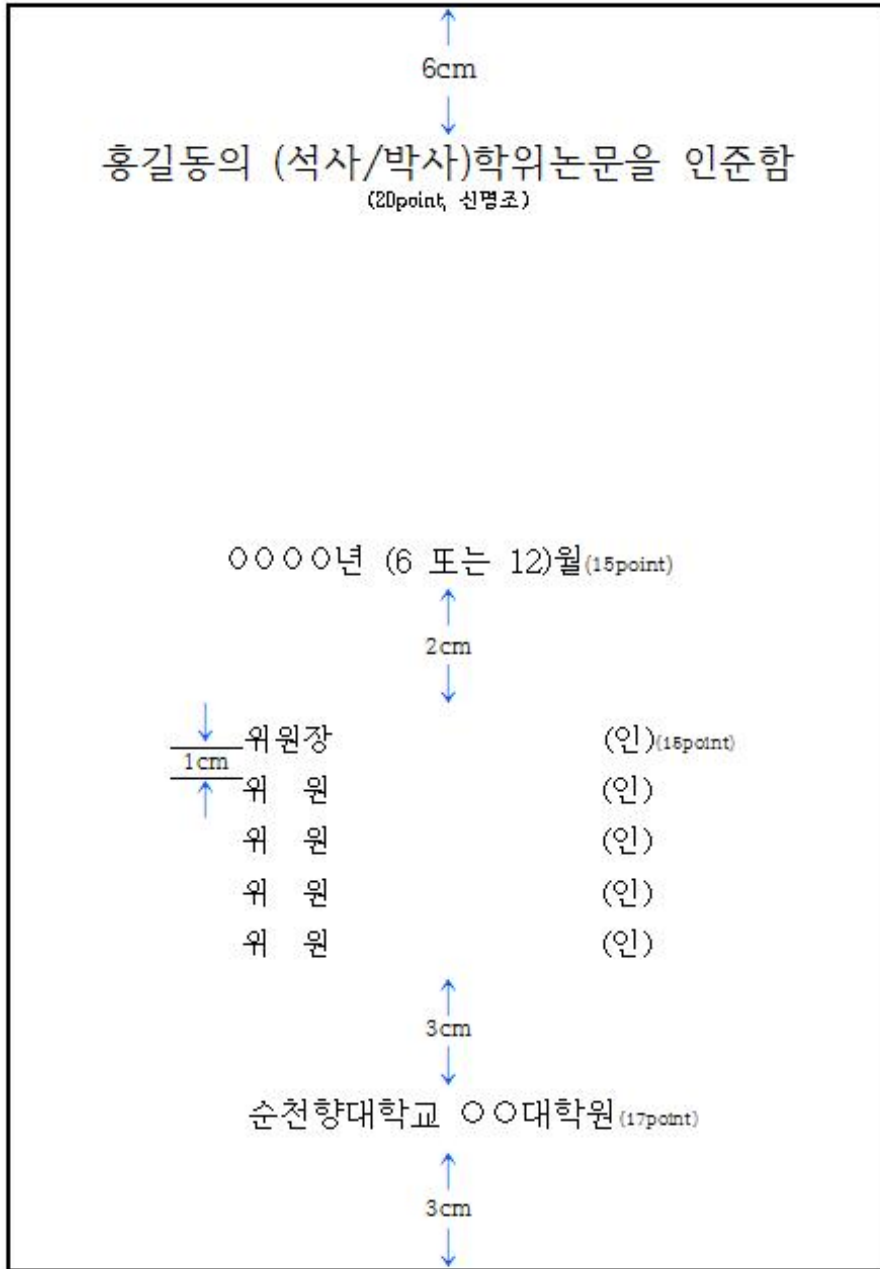


[별표2] 속표지의 양식 <개정 2015.3.1.>



※ 논문 제출일자는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날짜를 의미하며 해달 월까지만 표기함.  
 통상 제1 예비심사일을 기준으로 함.

[별표3] 인준서 양식 <개정 2015.3.1.>



※ 논문 인준일은 논문 중심일을 기준으로 초기하되 해당 날자가 속하는 월까지만 표기함.

(통상 0000년 6월 또는 12월)

※ 석사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박사는 5명이 날인함.